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.

1998. 4.2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 및 회부 일자

- 제안 : 1998년 4월 15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4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, 공무원여비규정 (대통령령 제15680호, '98.2.24) 이 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의 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종전의 “숙박료”를 “숙박비”로 고치는 등 용어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과 같도록 표기 (안 제5조, 제7조 및 별표1)
- “국외여비규정”을 적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적용 (안 별표2 중 비교1)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